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4호로 2025년 8월 14일 이순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더불어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비해 공중화장실의 육아 편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공중화장실 중 여성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화장실에는 설치 비율이 낮아 남성이 단독으로 영유아를 동반해 외출할 경우 기저귀 교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이에 2010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 최근 여성가족부는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 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진단 항목에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가 포함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화장실 구분 없이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성평등한 돌봄 환경 및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는 필요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